

# 고 소 장

고 소 인    윤 정 현

피고소인    고 병 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

# 고 소 장

고 소 인     윤정현

피고소인     고병천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소 사 실

### 1. 당사자 관계

#### 가.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은 1966. 9. 5. 육군 방첩대(보안사령부의 전신)에 군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교육대에서 근무하다가, 1972. 12. 26. 국군 보안사령부(국군 기무사의 전신, 이하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다가 1995. 11. 30. 퇴직할 때까지 군사법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1984년 당시, 보안사 대공처 대공2과에 근무하였고 계급은 준위, 직책은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는데, 이 사실은 고소인의 『1984년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수사공판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기록에 편철된 「인지동행보고」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해

‘1980. 9. ~ 1980. 12.경간에 일본 주소지 자가에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자가 출입하고 있는 등의 정보에 따라 일본 경찰에서 감시한바 있다는 정보에 따라 내사 후 임의동행’ 하였음을 1984. 8. 27.자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1984년 고소인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주수사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1984. 8. 27. 법관의 영장없이 불법으로 고소인을 보안사로 연행하였고, 장기간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갖은 협박과 폭행, 구타 및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여 간첩혐의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을 기소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나. 고소인의 지위

고소인은 한국국적의 재일동포 2세로 일본 경도(京都, 교토)소재의 경도대학을 졸업하고, 1980. 3.경 입국하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편입하여 재학 중, 보안사에 연행되어 1984. 10. 10. 구속되고, 1984. 11. 16. 기소되어, 1985. 4. 3.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형, 1985.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1985. 11.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1988. 6. 30. 가석방되었습니다.

고소인은 2010. 1. 14. 재심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10. 선고한 2010재고합5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1. 3. 31. 선고한 2011노245 판결에서 항소기각되고, 대법원에서 2011. 11. 10. 선고한 2011도4295 판결에서 상고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인 보안사에서 영장없이 장기간 불법으로 구금되어, 수사관에게 폭행과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

어 재심이 개시 되었고, 간첩혐의에 대한 아무런 입증 증거가 없고 오로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재심의 기초가 되었던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1984년 보안사에서 자신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이 고병천과 이덕용, 최모였다고 특정하였고, 특히 주로 피고소인 고병천이 주도했는데, 키는 작은 편이었고, 흰머리가 많았고, 약간 머리숱이 좀 없었고, 안경은 안 썼던 것 같고,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뚜렷하게 피고소인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으며, 수사관들의 사진 가운데에서 피고소인을 정확히 지목한바 있습니다.

## 2.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보안사의 위법한 수사행위)

고소인이 1984년 보안사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과정과 현재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안사는 민간인인 고소인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을 찾아온 재일동포유학생들에 대해 별다른 혐의도 없이 ‘수사근원발굴공작’이라는 명목으로 공작계획을 만들어 다수의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을 위장간첩으로 몰아 검거하고,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포함한 보안사 수사관들은 온갖 위법행위를 통하여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에 대해 1984. 8. 27. 법관의 영장없이 불법으로 고소인을 연행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4. 10. 8.까지 보안사 장지동 수사분실 등에서 43일 동안이나 장기간에 걸쳐 불법구금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과 보안사 수사관들은 고소인을 수사하면서 온갖 모진 폭행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였고 간첩행위에 대해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이 1985년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보안사수사관들의 폭행 고문 사실을 간단히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영장없이 불법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국군보안사령부의 수사요원들에 의하여 온갖 모진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시로 손으로,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을 뿐 아니라 옷을 벗긴 채 철제의자에 앉히고 몸을 끈으로 묶고 몽둥이로 구타하기, 물 적신 수건으로 코를 덮고 물 들이붓기, 엘리베이터 식으로 지하까지 오르내리는 의자에 태워 급강하시켜 지하 물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등의 잔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특히 피고인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만일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수사기관으로 데려 와서 재수사를 할 것인즉 검사 앞에 가서 부인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잔인한 고문이 특히 심하게 가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 연행 후 계속 조사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손으로 뺨이나 머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연행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북한에 다녀오거나 공작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며 구타는 물론이고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고병천, 이덕룡, 최모 등 3~4명의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나를 이발소 의자 같은 곳에 앉혀 팔과 다리를 의자에 묶고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은 채 바닥이 아래로 꺼져 내려갔습니다. 의자가 바닥

아래로 내려갈 때는 킁킁했고, 1층 정도 깊이의 지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바닥에는 물소리가 났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두 번 정도 계속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묶인 채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 후에는 간첩죄를 거짓으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은 일관되게 당시 고문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안사 수사관들은 단순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고소인에게 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고문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더구나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어 인간으로써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비롯한 보안사 수사관들은 고소인에게 온갖 폭행과 고문을 가하면서 강요한 것은 하지도 않은 행위 즉, 간첩행위를 시인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고통속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고 보안사 수사관들의 요구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인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소인이 이름도 정확히 모르던 사람을 공작지도원으로 만들거나, 고소인이 단순히 생활하면서 보고들은 내용을 국가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고소인이 유학중에 만난 국내 친구, 동료학생을 보안사로 연행하여 고소인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강요하거나, 사건 참고인인 심상일 등의 법정 증언 전에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계속 방청하였으며,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며 더욱 심한 고문과 함께 협박을 가하기까지 하면서 간첩행위를 조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여 한번 가보지

도 못한 북한을 방문하여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시인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보안사의 위법한 수사행위와 수사관들의 위법행위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2009. 10. 6. 발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일동포유학생윤정현간첩조작의혹사건 결정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2010. 8. 24. 선고된 재심개시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11. 10.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고소인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 3. 모해위증 사실

피고소인은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 라 한다) 소속 수사관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었던 자인바, 피고소인을 비롯한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고소인을 1984. 8. 27.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보안사 장지동 분실로 연행한 후 같은 해 10. 8. 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자백 진술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각종 고문 및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며 더욱 심한 고문과 함께 협박을 가하였으며, 보안사는 민간인인 고소인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보안사 수사관들은 심상일 등의 법정 증언 전에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계속 방청하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1980년대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 위장간첩 근원발굴’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범증 없이 각종 사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리 틀을 짜놓고 그 틀에 맞추어 고소인의 허위자백을 받아 범죄사실을 조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고소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무죄로 인정된다면 위 형사사건의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수사의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2011. 12. 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정된 고소인에 대한 위 법원 2010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피고인 윤정현에게 구타나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리고 피고인 윤정현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당시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증인이나 보안사령부 수사관 중에 당시 증인으로 나올 사람을 미리 만난 사람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 국정원이나 보안사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 “이 사건과 같이 범죄사실이 복잡한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불가능합니다. 범죄사실을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제가 다 써주어야 하는데, 그 몇칠 사이에 그런 조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 “위 김병진이 간첩 소외 서성수를 김해공항에서 검거할 때 공을 세워 보안사 대공 2과에 근무하게 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았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위 김병진으로부터 피고인 이외에도 조일지, 조신치, 허철중, 이직미, 이종수, 강종현 등도 제보를 받았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에 대하여 위 김병진이 쓴 ‘보안사’ 라는 책을 보면, 위 김병진이 피고인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재일교포 유학생 전부의 명단을 작성하여 놓고 이를 보이면서 ‘알고 있는 자는 없느냐.’ 라고 물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때 장지동 분실에서 피고인을 옆방에서 비명소리, 구타당하는 소리 등이 나는 방에 감금하여 놓고 겁을 주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장지동 분실의 구조는 옆방에서 나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때 수시로 손과 몽둥이 등으로 피고인을 구타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위 이덕용, 최홍상과 성명불상자 한 두 명과 같이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 하나 썸 돌을 달아 한강물에 던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고 협박하여 피고인을 겁먹게 하여 놓고 조사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피고인의 옷을 벗긴 채 피고인을 철제의자에 앉히고 몸을 끈으로 묶고 몽둥이로 구타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위 이덕용으로 하여금 물 적신 수건으로 피고인의 코를 덮고 강제로 머리를 뒤로 제치고 물들이 붓기, 엘리베이터 식으로 지하까지 오르내리는 의자에 태워 급강하시켜 지하의 물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등의 고문을 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이종수에게도 고문, 가혹행위를 하여 조사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피고인을 검찰에 송치할 무렵에 ‘검사 앞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데려다가 조사하겠다.’ 고 협박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위 이덕용과 최홍상 등은 참고인으로 조사한 심상일, 안혁 등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진술을 반복하면 다시 데려다 조사하겠다’ 고 협박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참고인을 협박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 “심상일은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법원에 출석하던 그날 서울시청 앞 어느 지하 다방에서 보안사 요원을 다른 학생 한 사람과 만났습니다. 보안사 요원은 법정에서 진술을 반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사 요원과 함께 서울지검에 가서 검사를 만났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으면 지금 내 앞에서 하라’ 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사실에는 보안사 요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계속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심상일의 위 진술은 사실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위 이덕용과 최홍상 등을 시켜 피고인이 재판받은 공판정에 출석하여 방청하게 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시킨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이 자술서 초안을 쓸 때 증인이 위 이덕용을 시켜 다른 간첩 소외 이종수의 자술서를 보고 쓰라고 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의 혐의가 군사기밀과 관계없고 피고인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안사에서는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습니다.

#### 4. 결론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어 진실을 은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포함한 보안사 수사관들의 위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함에도 피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증함으로써 형사사건 피고인인 고소인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인해 고소인을 모해하려는 목적으로 위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사법부를 비롯하여 국가는 과거사건 재심절차를 통해, 권위주의 시기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여 국민적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법원을 기망한 것만 아니라, 과거 억울한 수형사실로 인해 고통의 세월을 지나온 고소인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고소합니다.

## 증 거 서 류

- |              |                               |
|--------------|-------------------------------|
| 1. 증 제1호증    | 제2회 공판조서(2010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반 등)  |
| 1. 증 제2호증의 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문     |
|              | 2 진화위 신청인진술조서(윤정현)            |
|              | 3 진화위 참고인진술조서(심상일)            |
| 1. 증 제3호증    | 재심 개시 결정문(2010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반 등) |
| 1. 증 제4호증의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5 판결문(재심 1심)  |
|              | 2 서울고등법원 2011노245 판결문(재심 항소심) |
|              | 3 대법원 2011도4295 판결문(재심 상고심)   |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증거서류 | 각 1부 |
| 1. 위임장    | 1부   |

2012. 10. 19.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심 재 환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영 선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 경 옥

법무법인(유)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 상 희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 상 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